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장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외대어학연구소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183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08.1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2.19.

www.hafstory.com

hufsf@hufs.ac.kr



외대 HS어학원

정 보 공 개 서

(주)외대어학연구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04. 26.

(주)외대어학연구소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14, 지하 1 층 (이문동) (주)외대어학연구소
가맹사업부 Tel : 02-6235-2885 Fax : 02-6235-2880
hufsf@hufs.ac.kr www.hafstory.com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외대어학연구소	외대HS어학원 외 1개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14, 지하 1 층 (이문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3.06.10	2003.06.10	김종석	02-6235-2885	02-6235-2880
	법인등록번호	110111-2796427	사업자등록번호	101-81-9521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명칭(이름)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본부	(주)외대어학연구소	(주)외대어학연구소	외대HS어학원	김종석
	대표번호	팩스번호	주소	
	02-6235-2885	02-6235-288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14, 지하 1 층 (이문동)	
특수관계인 (임원)	김종석(대표이사) 김승년(감사) 권철근(이사) 장태엽(이사) 권혁재(이사) 박중찬(이사) 장지호(이사)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외대HS어학원	외대HS어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HAFSTORY어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합스토리어학원
상 호	외대HS어학원 OO점 외대HAFSTORY어학원 OO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외대 HS어학원	자세한 내용은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원번호: 40-2021-0222959
그 밖의 영업표지	합스토리 어학원	자세한 내용은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원번호: 40-2021-0222961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5,791,220	4,630,448	1,160,772	2,200,099	-905,289	-851,314
2022년	8,768,290	7,282,459	1,485,831	7,257,088	294,121	325,059
2023년	11,317,321	8,652,279	2,665,041	13,414,990	1,203,145	1,179,210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외대어학원 가맹사업 외 외대 HS 어학원 및 영어캠프사업도 하고 있으며, 당사의 매출액은 외대어학원 및 외대 HS 어학원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영어캠프 사업 관련 매출액으로 구성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종석	대표이사	2007.03~현재	(주)외대어학연구소 대표이사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가맹점 관리 회사업무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김승년	감사	2009.03~현재	(주)외대어학연구소 감사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회계 감사
	권철근	이사	2007.03~현재	(주)외대어학연구소 이사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법인 사무
	장태엽	이사	2009.03~현재	(주)외대어학연구소 이사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어학 교육 자문
	권혁재	이사	2007.03~현재	(주)외대어학연구소 이사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온라인프로그램 총괄
	박중찬	이사	2008.01~현재	(주)외대어학연구소 이사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대외 협력
	장지호	이사	2021.06~현재	(주)외대어학연구소 이사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대외 협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6	6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영업표지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외대어학원	가맹사업 경영	2003.06.~ 현재	
가맹본부	외대HS어학원	가맹사업 경영	2021.06.~ 현재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출원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외대 HS 어학원 HUFS HAFSTORY LANGUAGE INSTITUTE	상표 (제 41 류)	2021.11.03. 출원	출원 제 40-2021-0222956	(주)외대 어학연구소	2033.5. 18.
			등록 제 40-2024154-0000		
합스토리어학원	상표 (제 41 류)	2021.11.03. 출원	출원 제 40-2021-0222959	(주)외대 어학연구소	2033.5. 18.
			등록 제 40-2024160-000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외대HS어학원]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점 오픈일) : 2021년 09월 01일

–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08년 12월 15일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외대어학연구소	외대HS어학원	김종석	2021.09.01.~현재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14, 지하1층 (이문동)

3. 해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HS어학원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교육(외국어)	초,중등 영어학원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외대HS어학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9	18	1	23	22	1	24	23	1
서울	5	5	0	5	5	0	3	3	0
인천	3	3	0	4	4	0	6	6	0

경기	8	7	1	10	9	1	9	8	1
부산	1	1	0	1	1	0	1	1	0
대구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1	1	0
울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1	1	0	2	2	0	1	1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1	1	0	1	1	0	1	1	0
경남	0	0	0	0	0	0	1	1	0
제주	0	0	0	0	0	0	0	0	0
해외	0	0	0	0	0	0	1	1	0

5. 바로 전 3년간 [외대HS어학원]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증감
2021	0	18	0	0	0	18	0
2022	18	6	0	2	2	22	+4
2023	22	6	0	5	0	23	+1
합계	40	30	0	7	2	63	5

6. [외대HS어학원]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외대HS어학원]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
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전체	가맹점	직영점
2021	(주)외대어학연구소	외대어학원	20080100149	교육(외국어)	45	44	1
2022	(주)외대어학연구소	외대어학원	20080100149	교육(외국어)	43	42	1
2023	(주)외대어학연구소	외대어학원	20080100149	교육(외국어)	38	37	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역 ^④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⑤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⑥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3	333,871	4,445	952,319	5,079	92,388	2,310	15개 해당
서울	3							5개미만
인천	6	371,088	4,445	444,505	4,445	190,841	4,445	
경기	8	275,210	4,602	526,908	4,879	102,371	4,445	
부산	1							5개미만
대구	0							
광주	0							
대전	1							5개미만
울산	0							

강원	0							
세종	0							
충북	0							
충남	1							5개미만
전북	0							
전남	0							
경북	1							5개미만
경남	1							
제주	0							

* 6개월 미만 영업인 곳은 매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8. 외대HS어학원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외대HS어학원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3	412

* 계약일과 영업개시일이 1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 수가 적게 산출됩니다.

*해당 내역은 추정치임을 밝힙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158,058,410]천원이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수단 ^②	기간 ^③	지출 비용	비고 ^④
-----------------	-----------------	-----------------	-------	-----------------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23.01.01~ 23.12.31	158,058	158,058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한국외국어대학교지점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1층	02-969-005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우리은행 계좌 있는 사업자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우리은행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받아 보관 - 가맹금 예치시 필요서류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우리은행 계좌 없는 사업자		우리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 실행
계좌 개설 시 필요 서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우리은행과 가맹금 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②	조치일자 ^③	조치내용 ^④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외대HS어학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2,200만원(VAT포함)의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가맹금에는 학원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학원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3,000	아래 ‘※’ 사항 참조			
가맹비	22,000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시	가맹점 모집 및 영업개시를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홍보지원비	11,000	오픈월을 기준으로 총 4분기로 나누어 지급	계약 체결 후 14일 ~ 30일 이내 계약 해지시 또는 영업 활동(준비포함) 전까지		

※ 본사의 가맹 사업자 모집 정책에 의하여 홍보비 지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시 홍보지원비 지원 유무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말까지 지원 예정] 홍보비 지원시 오픈월을 기준으로 총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2) 보증금

－ 해당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33,000
가맹비	22,000
홍보지원비	11,000

※ 예치가맹금은 계약체결 시 가맹비의 10%, 계약체결 14일 이내에 90%를 예치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정한 예치계좌에 예치를 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시 예치한 가맹비의 10%는 위약금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도물량비가 있을 경우 반품이 불가한 물량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위의 사항과 별도로 당사와 합의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기로 합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m ² 당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44,000~ 61,000				
인테리어 (132 m ² 시공시)	가맹점 사업자 자율결정	30,000~ 34,000	750~850	귀하와 업 체간 약정 에 따름	귀하와 업 체간 약정 에 따름	해당 관할교육지 원청 규정에 따름
시설비		11,000~ 22,000				냉난방비, 책걸상, 컴퓨터 외
기타비용		3,000~ 5,000				마케팅, 개원설명회 비용

가. 개원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간판 등의 설치는 당사에서 시안을 제공하며, 간판 및 아트월 관련하여 본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단, 해당비용은 귀하가 업체측에 직접 지급함으로 귀하가 당사에 추가적으로 지급할 비용은 없습니다.

나. 위의 항목은 일반적인 임대면적(132m²)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단 업체 및 자재선정에 따라 가격이 많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당사는 귀하에게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피성년 후견인이 아닐 것 기존 학원 경험자 우대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강사	4년제 영어 관련 학과 졸업생 또는 TESOL자격자 및 교사자격증 우대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은 가맹점에서 자체조달 하며,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없음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주)외대어학연구소	해당없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부담금		가맹점사업자와 본사간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부담합니다.	신청기한내	전국단위 광고가 아닌 지역단위 광고를 진행하였을 경우 신청하지 않은분원에 한함	지역 광고 신청 완료 및 비용 지급등 비용 집행함	
판촉분담금		해당없음				
교육훈련비		가맹점사업자와 본사간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부담합니다.	요청기한내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장소 및 시설 등 교육 준비등을 완료함에 따른 비용 발생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V.1.4 항목참조	BI・CI를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귀하의 가맹점 내의 간판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귀하와 협의하여 구역을 조정하고 귀하가 부담합니다.				영업표지 변경 시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점주 선정업체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안 및 자료는 당사가 제공하고, 가맹점의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VII-1 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주)외대어학연구소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귀하의 가맹점 내의 POS 및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지연이자⑥	(주)외대어학연구소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교재비 및 이러닝 비용의 지급기 한을 경과했 을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산출 방식은 교재판매액 및 온라인학습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 해당매출에서 2023년 거래 가맹점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 해당 차액가맹금 금액과 비율은 추정치임을 밝힙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전 미납금 완납하여야 하며, 교재 및 온라인 학습 비용(연 단위 또는 단가 인상시 인상가능)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30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승계하는 것에 귀하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른 사업자와 귀하의 가맹계약체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게 될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 받은 경우에는 제3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만료될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BI・CI를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귀하의 가맹점 내의 간판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귀하와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해당비용은 감가상각비용 기준에 준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이 인정되며, 당사에 가입비 및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대가가 제외된 가맹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 없이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재계약이 안될 수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갑”과 “을”의 잔여계약 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기존 가맹비의 50%를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가맹비는 다음 표와 같으며, 가맹금 변동이 있을 경우 당사는 이를 가맹계약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해당 금액

이 명기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위: 만원, VAT포함)

구분	금액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가맹계약 당	3,300	1,100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귀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외대HS어학원”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 하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교자재를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교자재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교자재의 일부를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외대HS어학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나목)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나)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외대HS어학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외대HS어학원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HS어학원]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다.

3. 교육프로그램,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개점 전 당사가 지정한 교육프로그램만 판매해야 합니다. 지정된 교육프로그램 외에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당사가 귀하에게 개점 전 지정한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교육프로그램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 ALL IN ONE MANAGEMENT 시리즈 · SPIDER Phonics 시리즈 · LOOK with HUFS 시리즈 · Explore My World with HUFS 시리즈 · 당사가 제공한 커리큘럼에 기재된 교재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당사의 허가나 동의 없이 판매하거나 제작할 수 없음 [당사가 동의 또는 제공한 자료 제외]	1회 위반: 구두경고 및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20일] 3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40일] 4회 위반: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맹해지 예정 통보[60일] 5회 위반: 가맹 해지 통보[65일]	- 가맹 사업법 개정 법령 제 15조에 의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진행함 [당사가 동의 또는 제공한 자료 제외]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타 브랜드 가맹점	교자재 (교육프로그램)	거래상대방별 로 기재된 제품 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경고 및 시정 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20 일] 3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40 일] 4회 위반: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맹해지 예정 통보[60일] 5회 위반: 가맹 해지 통보[65 일]	가맹 사업법 개 정 법령 제 15 조에 의하여 2 개월 이상의 기 간을 두고 진행 함 [당사가 동의 또는 제공한 자 료 제외]
기타 자영업자	교자재 (교육프로그램)			

※ 다만, 외대 HS 어학원 가맹점사업자의 교자재 부족등 비상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프로그램명 · 상품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All in one management	3,000	변동 시 공지	레벨에 따라 3,000~5000원
SPIDER Phonics	15,200		2022.12.31 기준
LOOK with HUFS	17,000		2022.12.31 기준
Explore My World with HUFS	17,000		2022.12.31 기준
LOOK with HUFS & Explore My World with HUFS Practice book	5,000		2022.12.31 기준
당사가 제공한 커리큘럼에 기재된 교재	15,000		레벨에 따라 15,000~20,000원
3.0 교재비	38,000		2023.12.31.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초등, 중등 영어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영어학원	외대HS어학원	해당없음
초등, 중등, 고등 영어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영어학원	외대어학원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변경 가능 여부	변경 사유
인구 5만명 미만 지역에 1개 학원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본사에서 연령별 인구 및 교육상권을 기준으로 인구수 변동 가능함	가맹점사업자 동의시	상권 변화(기관 입주, 아파트 입주 등), 고객 선호 변화, 경쟁 영업표지 입점의 사유로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예상매출액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예상매출액보다 2.5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한국의 국어대학교 외대어학원 및 외대HS어학원’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66.7%	31.5%	1.7%	0%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0%	100%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① 외대HS어학원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조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학원·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수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제1조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2조 1항
○ 제5조 영업지역의 설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① 교육설비/집기 등의 설치 ② 교재 및 부교재, 교육프로그램의 조달과 관리 ③ 거래상대방에 따른 교재 및 부교재, 교육프로그램 판매의 제한 ④ 교육커리큘럼의 제한 ⑤ 가격결정의 제한 ⑥ 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⑦ 복장 ⑧ 광고 및 판촉 ⑨ 경업금지 ⑩ 교재 및 부교재, 교육프로그램 공급의 중단 ⑪ 로열티의 납입 ⑫ 외국인 강사 채용 및 교육 ⑬ 전국단위 평가테스트 ⑭ 원생정보 제출	
○ 제7조제2항 기존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 제7조제3항 실내장식, 학원확장/축소 및 이전, 외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제8조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제9조 "갑"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 제14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제17조제2항 "을"의 요건 변동 시 "갑"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 “을”이 “갑” 및 “갑”의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1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와의 동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양도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입비 및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대가가 제외 된 가맹비(양도계약체결시 가맹금의 50% 지급)→ 양수인 교육→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FC사업팀 (02-6235-2885)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 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V-6-2 참조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 범위 제한

외대HS어학원의 운영 시스템, 디자인 등은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 연구개발 노력 등을 투입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된 영업비밀 또는 영업노하우로 계약의 존속 중에 귀하 및 귀하가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과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동일한 업종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계약기간 중	학원 및 외국어(영어)교육과 관련된 동일한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FC사업부 (02-6235-2885)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외대HS어학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8:00~22:00 (14시간)	최저 영업일수 (주 2회이상, 월 8일 이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점주 자율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가 지정한 인력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는 분원 환경개선에 대하여, 학원설립법 및 본사에서 제공하는 CI등을 기준으로 불법적인 부분 및 본사와 동의없이 귀하가 별도의 형태 또는 형식으로 변형,변경할 경우 이에 대해 분원의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시에도 공급업체는 자체조달로 이루어 집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외대HS어학원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국광고	브랜드광고	20%	80%	광고 및 판촉행사 실시 30일 전 계획안 공고(가맹점부담액 제시)→ 가맹점의 행사 참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환기를 위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맹점모집광고		100%	—		
	개별광고		—	100%		
판촉	전국판촉		20%	80%		
	개별판촉		—	100%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가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CI, BI, BS, AP 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위약벌 규정 및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15조항

- ① “을”이 계약해지·종료 시 제 13 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을”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 일 (20 만원)의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제 12 조제 3 항의 합의해지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영업을 중단 또는 제 14 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500 만원)을 지급한다.
- ③ 제 6 조 제 9 항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2,000 만원)을 지급한다.
- ④ 제 9 조의 “갑”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을”이 누설 및 유출할 경우 위약벌로 (2,000 만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 ⑤ “을”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요구품목)을 자점매입할 경우 위약벌로(500 만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본 조의 경우 “갑”의 지급요청일에 “을”이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갑”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을”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⑦ “을”이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또는 “갑”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 또는 “을”이 소송 등의 행위를 하여 승소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및 실제 지출한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보수를 승소한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⑧ “갑” 또는 “갑”의 임원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단, 명확한 손해 발생 사항이 증빙과 금액이 확인 되어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계약가능기간이 7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서에만 해당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53~60일 (학원개발 및 상권분석기간 제외)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 전의 부담 1)~ 4)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 홈페이지문의, 방문	7일~14일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사업설명,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필요시 실시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2일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가맹금 예치 안내	3일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	1일	
실내외 공사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20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	1~2일	
교육실시	-운영 및 서비스 교육	당일	
그랜드오픈	-영업시작 -판촉 및 홍보이벤트 -예치가맹금 수령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학원선정이 늦어질 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 강사 채용이 늦어질 경우

※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 연락 (방문/전화 등)	귀하가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3	자문확인서 수령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거래사/변호사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4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 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 의한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비용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가 가능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오픈 행사 지원	가맹점 오픈 설명회 인력지원	가맹점 오픈시	오픈 당일 지원(1일)	50만원 한도 (가맹본부 부담)	
시장진입 마케팅	관리매체, 온라인 광고, 홍보매체, 오프라인 광고 등		초기 3개월		
시장장악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운영 가이드북 제공, 오프라인 마케팅 디자인 시안 제공	마케팅 표준안 제공			
본사 브랜드	월간 행사 및	본사	해당없음		

마케팅	교육 진행	프로그램 모두 이용시			
CRM	운영프로그램	본사 교육 및 결제 프로그램만 사용	계약기간내	가맹본부 지급	
브랜치별 세미나 지원	학부모 설명회 세미나 디자인 및 장표 제공	본사 프로그램 모두 이용시	계약기간내		
여름/겨울 캠프 특강 지원	여름, 겨울 방학 특강 및 캠프 커리큘럼 제공	해당없음	계약기간내		

3. 경영활동 자문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요청시 지원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지원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브랜치 마케팅 표준안 제공	기본정보수집, 마케팅분석, 마케팅 매체 제안, 마케팅 진행, 마케팅 성과 측정		초기 3개월 시장 진입 마케팅	매체, 온라인광 고, 오프라인 광 고, 설명회 지원 등	

시장 장악 및 상승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운영 가이드북 제공, 오프라인 마케팅 디자인 시안 제공		개원 후 3개 월 지난 시 점부터	공식 가이드북 제공, 각종 광고 업체 정보 수록, 학사 일정 캘린 더, 차량 현수 막, X배너 시안 제공	
본사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언론 보도, 학부모 특강, 입시 설명회 교육, 외대부고 방문행사, Speech contest, 등 연간행사 지원	본사 프로그 램 이용시	연중 내내	수능 만점자 학 생 특강, 입시설 명회 연 2회 진 행, 외대부고 출 신 아이비리그 재원생 특강, 크 리스마스 행사, 외대부고 방문 행사, 등	

※ 분원현황 및 본사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외대HS어학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
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의 신교육프로그램 개발은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의 변화, 경쟁업체
의 출현 등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사의 신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외대HS어학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2일(점주와 협의)	해당없음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 교육	1일	실비	년 마다 필수이수
	1일	해당없음	매월 필요자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①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강사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당사의 신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 및 귀하의 강사는 신교육프로그램 교육 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외대어학원 본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76번길 7, 4층(정자동,

			대명빌딩)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5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2,590,368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 (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기재합니다. 매출액 산정근거 자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10%)은 제외하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영점 수로 나눈 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연 및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③ 연간 평균 매출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였는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직영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시키고, 직영점의 영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은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별첨1.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021~2023)

손익계산서 (202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재무상태표 (202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손익계산서(202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재무상태표(202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손익계산서(202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재무상태표(202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인근학원리스트

당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학원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학원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학원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장래 학원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원리스트를 제공합니다.

No.	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외대HS어학원 _____분원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_____)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주) 외대어학연구소
	성명(대표자)	김종석
	주소(사무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14, 지하 1층(이문동) (전화 : 02-2173-2921)
예치가맹금		₩ 33,000,000(금 삼천삼백만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비공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우리은행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점장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 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